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86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구자근 · 이상희 · 박성민  
최수진 · 김선교 · 강승규  
박준태 · 정점식 · 김성원  
강명구 · 김도읍 · 김위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그런데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과”를 “산업,”으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을 “산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